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1

제출년월일 : 2014. 4.9.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 건축법등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용어 정비……(안 제13조)
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3조)
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의2)
라. 준주거 · 중심상업 · 일반상업 · 근린상업 · 유통상업 · 준공업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27조, 별표 6, 7, 8, 9, 10, 13)
마. 생산녹지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식품공장의 정의 명확화……(별표 15, 16)
바.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용어 정비……(안 제42조, 제43조, 별표 11)
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7조, 제59조의2, 제71조, 제113조의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안산시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현행 안산시도시계획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4. 2. 26. ~ 2014. 3. 18.(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으로 하고, "영 제43조제1항제8호" 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 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대지규모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대지규모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대지규모가 660제곱미터 이내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4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안산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있는" 을 "없는" 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3호 중 "있는" 을 "없는" 으로, 같은조 제2항 중 "제1항제7호부터" 를 "제1항제6호부터" 로, "있는" 을 "없는" 으로 하고, "일반숙박시설 및" 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로 하며, "일반숙박시설" 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로 하고, "이내에" 를 "밖에" 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일반숙박시설" 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로 한다.

제42조제5호 중 "요양소 및 장례식장" 을 "요양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 으로 한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제43조제8호 중 “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요양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5개월”을 “30일”로 한다.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3, 별표15, 별표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별표6부터 별표10까지, 별표13의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도시계획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계장·팀장 직위·성명	도시계획계장 송세종
	실무관 성명·전화	이태주 (행정 2373)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자.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주유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

라.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마.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사.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7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사.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

나.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8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마.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아.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라.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9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 이라 한다)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바.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1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 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나.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마.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사.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아.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자.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5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라.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2)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3) 직업훈련소

마.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6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동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 1. ~ 7.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7조 부터 제50조까지의 용도지역 · 지구의 건축제한 등의 범위에서 대지규모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4. 〈생략〉 5. 〈신설〉 6. 〈신설〉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대지규모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대지규모가 660제곱미터 이내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 1.~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제24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안산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 없는 ·····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 없는 ·····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 없는 ·····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 없는 ·····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 없는 ·····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 18. (생략)	14. ~ 1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반숙박시설 150미터, 위락시설 6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② ····· 제1항제6호부터 ····· 없는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밖에 ·····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지역과 차단시키는 지형지물은 높이가 일반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③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4.(생략)	1.~4.(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요양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
6.~16(생략)	6.~16(현행과 같음)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7.(생략)	1.~7.(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요양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
9.~24(생략)	9.~24(현행과 같음)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략)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30일이·····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6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다.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차.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가.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나.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마.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주유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
사.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주유소, 위험물제조소, 위험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폐차장을 제외한다) 자.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교정·군사시설 카.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하.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1호바목의 의료시설에서 병원중 "종합병원, 병원"의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압가스판매소, 라.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마.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사.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7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7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아.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카.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 저장소 사.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 인쇄업 · 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 나.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라.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8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나.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8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하.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마.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아.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마.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바.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폐차장을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라.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9호 관련)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9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나.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바.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자.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차.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마.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타.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라.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라.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카.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타.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다.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라.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11호 관련) 1. (생략) 가. ~ 아.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 사. (생략)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1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 아.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라. ~ 사. (현행과 같음)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제1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마.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바.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사.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사.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카.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타.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파.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다.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

현 행	개 정 안
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마.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바.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를 제외한다) 사.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15호 관련) 1. (생략) 가. ~ 타. (생략) 2. (생략) 가. ~ 라. (생략) 마.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15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 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16호 관련) 1. (생략) 가. ~ 더. (생략) 2. (생략) 가. ~ 마. (생략)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 아. (생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16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 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 아. (현행과 같음)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이태주 2014-04-04 17:29